

○ 지원대상 판정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별 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1,064,078	32,659	9,963	33,048
3인	1,376,546	42,212	18,435	42,490
4인	1,689,013	51,325	31,089	51,595
5인	2,001,481	61,379	47,997	62,201
6인	2,313,948	70,377	62,319	71,216
7인	2,626,416	80,471	78,397	81,424
8인	2,938,884	89,521	90,369	90,671
9인	3,251,352	99,769	105,472	100,852
10인	3,563,820	109,401	119,055	110,823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영서 제출



위험할 땐 119
입겨을 땐 129
보건복지부 센터

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의 질병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결핵(A15, A16, A17, A18, A19, O98.0)
- 임질(A54.8, A54.9)
- 헤르페스 감염(B00)
 - 유방에 활동성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가능
- 수두(B01, B02)
-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B25)
-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B16)
- HTLV감염(C91.5, Z22.6)
- 알코올 중독(F10)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가능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가능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취급하는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376,546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689,019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천원 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 가까운 구매 가능한 나들가게 등록업체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서비스 포털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 신청 자격 및 기간, 장소 등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 부모 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예외적으로, '14.10월생은 '15.10.30일까지 신청할 경우 1개월분 지원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카드신청

- '15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포인트는 BC카드를 통해서만 적립되므로, 타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추가 발급 필요

영아포인트 BC카드사,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체국(10곳)
※ NH농협(11.29일)부터, 광주은행·전북은행(12.1일)부터 신청·발급 가능

※ **카드발급문의**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은행 콜센터

- 카드발급은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 명의로 발급되며, 실종·사망 등으로 부모가 모두 부재한 경우에 한해서 주양육자에게 카드 발급 가능

○ 신청 구비서류 목록

구비서류 목록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12.1일부터 적용)
* 12.1일 이전 카드 발급 신청자는 발급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1부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기타 신청자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

문의사항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

